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11. 14.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문단번호
참조	
배경	1~3
적용	한4.1
적용범위	4~9
회계논제	10
결론	11~27
시행일	28~28F
경과규정	29~30

부록 A. 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첨부자료

적용사례 (IE1-IE38)

[결론도출근거]

IFRIC 12의 결론도출근거 (BC1-BC77)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은 문단 1~30과 부록 A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첨부자료,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 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참조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배경

많은 국가에서 도로, 교량, 터널, 교도소, 병원, 공항,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통신망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왔으며, 공공예산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¹⁾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년 11월 공표)를 말한다.

2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 중에 건설될 수도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예: 수용 능력의 증가)하며 일정기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민간부문기업(사업시행자)이 일반적으로 관련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기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민간투자 사업은 성과기준, 사용료의 조정방식 및 분쟁의 중재방식을 규정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관리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행방식에는 '건설-운영-이전'방식, '복구-운영-이전'방식 등이 있다.

3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의무가 공 공서비스 성격이라는 것이다. 누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느냐에 관 계없이, 공공정책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서비스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다른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는 당사자(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은 민간부문일 수 있다.
- (2) 사업시행자는 최소한 사회기반시설의 경영의 일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단순히 사업허가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3)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부과하게 될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사용료의 조정방식을 규정한다.
- (4)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말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 아주 작은

대가로 또는 대가없이 사업허가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는 누가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였느냐에 무관하다.

적용

한4.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4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 의 지침을 제공한다.
- 5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 (2) 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 6 전체 내용연수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문단 5(1)의 조건만 충족되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부록의 AG1~AG8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포함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7 이 해석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 (1)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 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2)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 자사업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8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인식한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관 련 규정이 적용된다.
- 9 이 해석서는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 10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의무 및 권리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공한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룬다.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 (2)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 (3)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 (4) 운영서비스
 - (5) 차입원가
 - (6) 대가로 받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후속 회계처리
 - (7)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결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서 비스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 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 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 영할 권리를 가진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 12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고(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일정기간 그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한다(운영서비스).
- 13 사업시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가 결정된다.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받은 대가의 후속 회계처리는 문단 23~26에서 상세하게 규정한다.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

14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5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다. 이 경우에 대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권리일 수 있다.

- (1) 금융자산
- (2) 무형자산
- 16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이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허가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재량이 거의 없다. 사회기반시설이 특정한 품질과 효율성 요구조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보장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더라도, (1)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거나 (2)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 17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사업면허)를 한도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용자에 대한 사 용료 부과권리는 그 금액이 이용자들의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무조건부의 권리와 다르다.
- 18 만약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받고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받는다면 각각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때, 각 요소별로 최초에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다.
- 19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서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은 실시협 약과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단 23~26에서 기술

하는 바와 같이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대가를 모두 건설기간이나 갱신기간에 계약자산으로 분류한다.

운영서비스

20 사업시행자는 운영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 약상 의무

- 21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가지는 사업면허의 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 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1)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을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특정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상기의계약상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즉,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 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기준서에 따라 건설기간 동안 자본화한다

금융자산

- 23 문단 16과 18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09호를 적용한다.
- 24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되는 금 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 (1) 상각후워가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3) 당기손익-공정가치
- 25 만약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금액을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 자율법으로 계산된 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

26 문단 17과 18에 따라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한다. 동 기준서 문단 45~47에서는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27 문단 11에 따라, 사업허가자가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 자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할 대가

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한 대로 거래가격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시행일

- 2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28.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 28A-28C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8D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 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 첨부자료 2의 표, 문단 13~15, 18~20, 2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8E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3~25를 개정하였고 문단 28A~28C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28F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AG8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29 문단 3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해석서를 적용함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한 다.

- 30 특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실무적으로 이 해석서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존재하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2)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관계없이)을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 (3) 그 시점에 인식된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손상검사를 할 수 없다면, 당기초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적용범위(문단 5)

-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 (2) 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 AG2 조건 (1)에서의 통제 또는 감독은 실시협약이나 다른 방법(감독기구를 통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허가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매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허가자가 산출물 전부를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조건을 적용할 때, 사업허가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공공부문 내 하나의 조직이라면, 이 해석서의 목적상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감독기구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당해 사업허가자와 특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 AG3 조건 (1)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허가자가 사용료의 가격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예를 들어, 가격상 한제의 도입과 같이 사업허가자나 실시협약 또는 감독기구에 의한 가격 규제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상한 제와 같이 실질적이지 못한 사항들은 무시되어야 한다. 역으로,

만약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든 초과이익을 사업허가자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상한이 주어진 것이며 가격요소는 통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 AG4 조건 (2)에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업허가자가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실질적으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동시에 사업허가자가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란 해당 시설이 이미 오래되어 사업기간 말에 예상되는 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추정되는 현행가치를 말한다.
- AG5 통제는 관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문단 5(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통제와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보유한다면, 비록 사업시행자가 많은 경우에 관리상의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허가자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단지 관리할 뿐이다.
- AG6 조건 (1)과 (2)는 어떤 경우에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필요한모든 교체를 포함(문단 21 참조))을 경제적 내용연수 전체 기간동안 통제하는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분(예:도로표면층 또는 건물의 지붕)을 교체해야 한다면, 사회기반시설은 전체로서 통제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 중 당해 일부분의 최종 교체분에 대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면, 교체된 일부분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조건(2)가 충족되는 것이다.
- AG7 때때로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이 부분적으로는 문단 5(1)의 방식으로 감독되고 부분적으로는 감독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민간투

자사업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1) 사회기반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현금창출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감독되지 않는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분리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자가 공공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병원 내에 공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분석한다.
- (2) 병원의 구내매점과 같은 순전히 보조적인 사업이 감독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제 여부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사업허가자가 문단 5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조적인 활동이 존재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사업허가자의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 AG8 사업시행자는 문단 AG7(1)에서 설명하는 분리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고, 문단 AG7(2)에서 설명하는 감독받지 않는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업허가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실질적 리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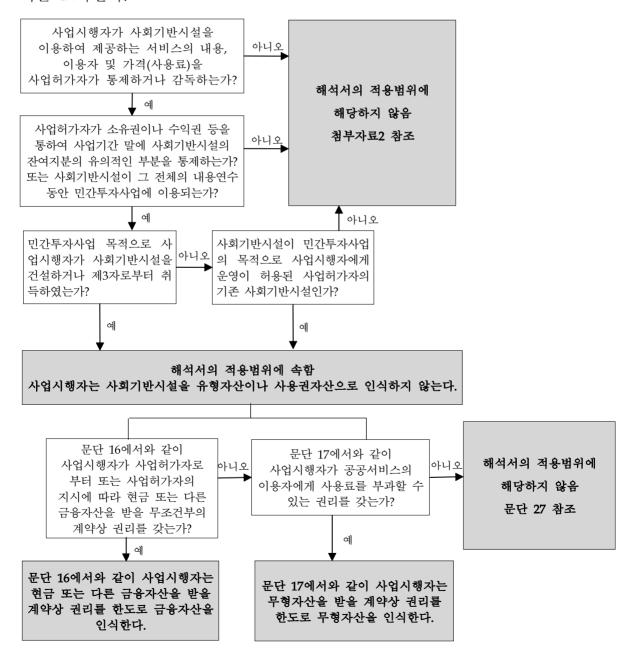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첨부자료 1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한다.



첨부자료 2

민간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참조

이 첨부자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IFRS의 참조를 제공한다. 대응목록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표의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IFRIC의 의도가 아니다.

범주	리스이용자	서기	비스제공자			소유자	
전형적인 사업형태	리스(예: 서비스 복구- 건설- 사업시행자가 그리고/또는 운영- 운영- 사업허가자로 유지보수 이전 이전 부터 자산을 계약(특정 리스한 경우) 업무 예: 부채의 회수)		복구- 운영- 인전 이전		건설- 소유- 운영	100% 매각/ 민영화/ 기업화	
자산 소유권	사업하	취가자			사	업시행자	
자본 투자	사업전	허가자			사업시행자		
수요 위험	공유	사업허가자	그리고	시행자 1/또는 허가자	사업시행자		
전형적인 기간	8~20년	1~5년		25~30년		비한정 (또는 라이선스로 제한될 수 있다)	
잔여지분	사업전	허가자			사업시행자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6호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5호	기업회계 <i>7</i> 제21	기준해석서 12호	기업 ⁷	회계기준서 세1016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사례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1: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IE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세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1.1 계약원가 (단위: 원)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운영서비스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IE3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수익

IE4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인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또는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할 의무를진다. 8차 연도에 사업시행자는 도로 재포장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보상 받을 것이다.

IE5 총 예상대가(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표1.2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거래가격

	거래가격 배분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효과 포함)
	(단위: 원)
건설서비스 <u>(</u> 2년간) ⁽¹⁾	1,050
운영서비스(8년간) ⁽²⁾	96
도로 재포장(8차 연도) ⁽³⁾	110
중1 -11	
합계	1,256
내재이자율 ⁽⁴⁾	매년 6.18%

- (1)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2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3)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4) 내재이자율은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 사이의 별도 금융거래에 반영될 이자율이라고 가정한다.

IE6 예를 들면, 1차 연도에 500원의 건설원가, 525원의 건설수익과 그 결과로 25원의 건설이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자산

IE7 처음 2년 동안은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IE8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유효이자율은 매년 6.18%이고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각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표 1.3 계약자산/수취채권의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	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 (1)	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525원)	32
2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	525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	1,082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1,082원)	67
3차 연도에 운영활동으로 받을 금액 (10원 x (1 + 20%))	12
3차 연도의 수령금액	(200)
3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	961

(1)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차 연도에는 유효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9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1.4 현금호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¹⁾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²⁾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현금유입 (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 (1) 표 1.1
- (2) 연초 부채(표 1.6) * 6.7%

표 1.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익	525	525	12	12	12	12	12	122	12	12	1,256
계약원가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금융수익 ⁽¹⁾	-	32	67	59	51	43	34	25	22	11	344
차입원가 ⁽²⁾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이익	25	23	-	-	-	2	3	14	5	6	78

- (1) 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표 1.6) * 6.18%
- (2) 현금/(부채)(표 1.6) * 6.7%

표 1.6 제무상태표

(단위: 원)

연도말	1	2	3	4	5	6	7	8	9	10
사업허가자로부 터 받게 되는 금액 ⁽¹⁾	525	1,082	961	832	695	550	396	343	177	-
현금/(부채) ⁽²⁾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순자산	25	48	48	48	48	50	53	67	72	78

- (1) 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에 당 연도 수익과 금융수익(표 1.5)을 더한 후 당 연도 현금수령액(표 1.4)을 차감한 금액
- (2)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을 더한 금액(표 1.4)

IE10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커질 수 있다.

사례2: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을 제공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IE1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2.1 계약원가 (단위: 원)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 - 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1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로

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통행 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IE13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무형자산

IE14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 사이에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가로 사업 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전한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IE15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무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은 무형자산(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으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의 이익을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제1023호 '차업원가'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표 2.2 무형자산의 최초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자본화된 차입원가 (표 2.4)	34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IE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1,084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1,084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135원이다.

건설원가와 건설수익

IE17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업시행자는 받았거나 받게 될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약수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건설이익은 25원이 된다.

통행료 수익

IE18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 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때 통행료 수익을 인식한다.

재포장 의무

- IE19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 IE20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현재가치로 할인함)

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회계기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재포장 의무

(단위: 원)

연도	3	4	5	6	7	8	합계
연도별 발생 의무 (17원을 6%로 할인)	12	13	14	15	16	17	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 채가 증가한 금액	0	1	1	2	4	5	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	12	14	15	17	20	22	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21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2.4 현금호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¹⁾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²⁾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현금유입(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 (1) 표 2.1
- (2) 연초 부채(표 2.6) * 6.7%

표 2.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익	525	525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650

상각	-	-	(135)	(135)	(136)	(136)	(136)	(136)	(135)	(135)	(1,084)
재포장 비용	-	-	(12)	(14)	(15)	(17)	(20)	(22)	-	-	(100)
기타 계약 원가	(500)	(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80)
차 입 원 가	-	-	(69)	(61)	(53)	(43)	(33)	(23)	(19)	(7)	(308)
순이익	25	25	(26)	(20)	(14)	(6)	1	9	36	48	78

- (1) 건설 단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
- (2) 班 2.4

표 2.6 <i>제무상태표</i>	
--------------------	--

(단위: 원)

연도 말	1	2	3	4	5	6	7	8	9	10
무형자산	525	1,084	949	814	678	542	406	270	135	-
현금/(부채) ⁽¹⁾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재포장 의무	-	-	(12)	(26)	(41)	(58)	(78)	-	-	-
순자산	25	50	24	4	(10)	(16)	(15)	(6)	30	78

(1)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2.4)을 더한 금액

IE22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커질 수 있다.

사례3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IE23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 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3.1 계약원가 (단위: 원)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 IE24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예상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추정)을 참조하여 1,050원으로 추정한다.
- IE25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최소한 700원과 현금수령 시기를 반영하여 특정 이자율인 6.18%의 이자를 보장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 기간에 걸쳐 통행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 IE26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계약의 분할

IE27 사업허가자에게서 서비스 대가로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의 권리와 이용자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두 개의 별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건설단계 동안의 계약자산은 두 가지 요소(보장된 금액에 근거한 금융자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형자산)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서비스가 완료되면 계약자산의 두 요소를 각각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표 3.2 사업시행자 대가의 분할

(단위: 원)

연도	합계	금융자산	무형자산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525	350 350	175 175
· 총 건설서비스	1,050	700	350
금융수익(수취채권에 대해 6.18%의 특정 이자	100% 22	67% ⁽¹⁾	33%
율 적용) (표 3.3 참조) 자본화된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한 이자 × 33%) (표 3.7 참조)	11	-	11
사업시행자 대가의 총 공정가치	1,083	722	361

(1) 건설서비스 중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금액의 비율

금융자산

IE28 처음 2년 동안에는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IE29 이러한 기준으로 2차 연도와 3차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표 3.3 수취채권의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계약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	350
1차 연도말의 계약자산	350
2차 연도에 금융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	350
1차 연도 말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이자 (6.18% × 350원)	22
2차 연도말의 수취채권	722
2차 연도 말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이자 (6.18% × 722원)	45
3차 연도의 현금 수령액 (표 3.5 참조)	(117)
3차 연도말의 수취채권	650

무형자산

IE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31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를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표 3.4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175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된 이자 × 33%) (표 3.7참조)	11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175
2차 연도말의 무형자산	361

IE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차입원가를 포함하여 361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361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45원이다.

수익과 원가

IE33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받는 대가로 사업허가자에 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자산모형과 무형자산모형 모두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회계처리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원가에 5% 가산)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통행료 수익

IE34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현금호름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수령액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무형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배분한다.

표 3.5 통행료 수령액의 배분

(단위: 원)

연도	금액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수령액	700
금융 수익 (표 3.8참조)	237
합계	937
매년 금융자산의 실현으로 배분되는 현금 (937원 / 8 년)	117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수령액 (200원 x 8 년 - 937원)	663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연간 수령액 (663원 / 8 년)	83

재포장 의무

IE35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IE36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i>제포장 의무</i> (단	위:	운	<u>l)</u>
------------------------	----	---	-----------

연도	3	4	5	6	7	8	합계
연간 발생의무 (17원을 6%로 할인)	12	13	14	15	16	17	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채가 증가한 금액	0	1	1	2	4	5	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	12	14	15	17	20	22	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IE37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3.7 *현금호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	---	---	---	---	---	---	---	---	----	----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¹⁾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²⁾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 현 금 유 입 (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 (2) 연초 부채(표 3.9) * 6.7%

표 3.8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건설수익	525	525	-	-	-	-	-	-	-	-	1,050
무형자산으로 부터의 수익	-	-	83	83	83	83	83	83	83	83	663
급융수익 ⁽¹⁾	-	22	45	40	35	30	25	19	13	7	237
상각	-	-	(45)	(45)	(45)	(45)	(45)	(45)	(45)	(46)	(361)
재포장 비용	-	-	(12)	(14)	(15)	(17)	(20)	(22)	-	-	(100)
건설원가	(500)	(500)									(1,000)
기타 계약 원가 ⁽²⁾			(10)	(10)	(10)	(10)	(10)	(10)	(10)	(10)	(80)
차 입 원 가 (표 3.7) ⁽³⁾	-	(23)	(69)	(61)	(53)	(43)	(33)	(23)	(19)	(7)	(331)
순이익	25	24	(8)	(7)	(5)	(2)	0	2	22	27	78

- (1) 수취채권에 대한 이자
- (2) 표 3.1
- (3) 2차 연도의 차입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된 금액을 차감 후 표시됨(표 3.4 참조)

표 3.9 *제무상태표*

(단위: 원)

연도말	1	2	3	4	5	6	7	8	9	10
수취채권	350	722	650	573	491	404	312	214	110	-
무형자산	175	361	316	271	226	181	136	91	46	-
현금/(부채) ⁽¹⁾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재포장 의무	-	-	(12)	(26)	(41)	(58)	(78)	-	-	_
순자산	25	49	41	34	29	27	27	29	51	78

(1)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3.7)을 더한 금액

IE38 이 사례는 실시협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12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द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for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Financial Reporting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
	International Financial		초채택
	Reporting Standards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Disclosures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with Customers		수익
IAS 8	Accounting Policie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Changes in Accounting		과 오류
	Estimates and Errors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6	Property, Plant and	제1016호	유형자산
	Equipment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20	Accounting for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
	Government Grants and		부지원의 공시
	Disclosure of Government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ssistance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3호	차입원가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 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 는지의 결정					
SIC 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IFRIC 12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12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도입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문단 1~3)

- BC2 SIC 29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공시요건을 포함하지만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BC3 이러한 지침의 결여에 대하여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또한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와의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 BC4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우려를 표명한 나라 중 4개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에 이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요청하였다. 작업반은 IFRIC이 현행 회계기준들의 특정 측면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BC5 2005년 3월에 IFRIC은 의견조회를 위해 세 가지 해석서 공개초안 [D12 '민간투자사업: 회계 모형의 결정(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 Determining the Accounting Model)', D13 '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모형(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 The Financial Asset Model)', D14 '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모형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 The Intangible Asset Model)']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77건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또한 제안된 해석서를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IASB의 스태프는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났다.

BC6 D12~D14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해석서를 개발하겠다는 IFRIC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는 포괄적인 기준서로 제정되도록 이 과제를 IASB로 회부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BC7 제안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이 과제가 대규모 작업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과제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적시에 이 회계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IASB보다 IFRIC이 더 낫기 때문이었다.

용어

BC8 SIC 29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Grantor'(사업허가자)와 'Operator' (사업시행자)를 설명하기 위해 'Concession Provider'와 'Concession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와 IFRIC 위원은 이 같은 용어들이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IFRIC은 '사업허가자(grantor)'와 '사업시행자 (operator)'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SIC 29

를 개정하였다.

적용범위 (문단 4~9)

- BC9 IFRIC은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막대한 선행 투자가 수반되고 사업허가자와 사업시행자 모두 사업기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BC10 작업반은 IFRIC 과제의 적용범위가 민간투자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BC11 제안을 마련하면서 IFRIC은 사업허가자가 (1)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감독하고 (2)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업만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까지 지침을 필요로 했던 대부분의민간투자사업에서 충족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BC12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 특히 사회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리스된 경우 또는 반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BC13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하면서 IFRIC은 해석 지침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이미 포함하였고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이 해석서가 유의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제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과제의 적용범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 IFRIC은 제안된 해석서는 문단 10에서 기술된 회계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재심의 과정에서, 제안된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려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가 다른 기준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경험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과제가 추후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자료 2는 IFRIC이 고려한 사업 형태의 관련 기준에 대한참조표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부문간의 계약

BC14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해석서가 민간부문간의 실시협약을 포함하도록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FRIC은 문단 5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문단 3에서 기술한 특성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았기 때문에, 민간부문간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이 과제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IFRIC은 IAS 8의 문단 7~12에서 규정한 서열체계에 따라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

BC15 이 해석서는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IFRIC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침의 제정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IC이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IFRIC은 많

은 경우에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이고 비록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IFRS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IFRS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또는 정부의 비영리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였다['IFRS에 대한 전문(Preface to IFRSs)'문단 9 참조].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

- BC16 IFRIC이 현행 회계기준의 제거 요건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해석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 BC17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 이러한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IFRIC이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 청하였다.
- BC18 IFRIC은 그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에서 이 해석서의 목적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임을 주목하였다.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해 다루는 회계논제는 제거의 문제이고, 이는 이미 IFRS(IAS 16)에서 언급되고 있다. 의견제출자로부터 받은 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특정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의 사용권을 사업허가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FRS의 제거 요건을 적용할 것이다.

유의적인 잔여지분 기준

BC19 D12의 문단 5(2)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사업기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이전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유의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잔여지분 기준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 내용연수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침의 유용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고, IFRI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IFRIC의의도가 아니었다. 제안서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사업기간말에 사업허가자에게 이전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 유의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서의 내용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내용연수'사회기반시설(즉,사회기반시설이 그내용연수의 전체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이해석서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 BC20 IFRIC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 IAS 16에서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그 사용을 통제하는 당사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어느 당사자가 유형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통제는 다음과 같이 Framework》에서 언급되고 있다.
 - (1) Framework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 (2) Framework에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을 포함한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필수적이

²⁾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지는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 (3) 권리는 종종 분리된다. 예를 들어, 권리는 토지에 대한 분리되지 않은 지분과 같이 비례적으로,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와 같이 특정한 현금흐름에 따라, 또는 리스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 BC21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처리는 문단 5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사업허가자가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만일 그렇게 통제된다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업기간에 어느 당사자가 법적 소 유권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BC22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IFRIC은 IAS 16에 따른 인식과 IAS 17에 따라 리스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의 통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16에서 유형자산을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항목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들은 다른 기준서에서 다른 방식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대상 유형자산의 인식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IAS 17의 요구사항을 다른 방식의 예로서 강조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리스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IFRIC 4에서는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리가 이전된다면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

된다고 보았다.

- BC23 따라서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리스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IAS 17을 참조할 수 있다. 리스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 BC24 IFRIC은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 '약정대상 자산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사업이 문단 5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리스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25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인식하는 자산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이지 건설하거나 개량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 BC26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의 위험과 보상을 사업시행자나 사업허가자가 부담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없이 사용의 통제만을 근거로 인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리스자산을 소유에 따른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인식하는 IAS 17과 제안된 방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BC27 이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만약 사업이 이 해석서 문

단 5의 통제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지 않고, 따라서 IAS 16에 따른 유형자산이나 IAS 17에 따른 리스의 성립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확인하였다. 사업허가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실시협약은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 IAS 183) 문단 14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회계처리가 IAS 18과 일관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5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사업허가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결부된통상적 수준의 지속적 관리상 관여를 하고 통제한다.

BC28 민간투자사업에서 권리는 보통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전되는데, 이는 리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리스이용자의 권리와 다르다. 문단 5(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허가자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및 가격(사용료)을 통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다. 또한 사업허가자는 사업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권도 보유한다. 리스와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BC29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IFRIC 4와 중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특히 특정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내용이 IFRIC 4에 따라서 리스로 간주되고 또한 IFRIC 12의 문단 5에 규정된 적용범위 조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제출자의 견해에 주목하였다. IFRIC은 회계처리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계약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민간투자사업이 IFRIC 12의 적용범위 조건을 만족하면 IFRIC 4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3)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IFRIC 4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문단 12와 13)

BC30 건설과 서비스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IAS 11과 IAS 184)에 규정되어 있다. 동 기준서들은 수익은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AS 18은 수익을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IC은 실무상, 제공되는 건설서비스의 공정가치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를 정하는 가장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 활동에 관련된 대가는종종 계약전체로서 받을 총 금액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또한 이중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측정이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BC31 IFRIC은 IAS 18에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제품의 판매 가격에 후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이연되어 서비스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IFRIC은 이러한 규정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즉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비록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일반적으로 단일 실시협약으로 협의되더라도, 각각의 개별 단계 또는 구성요소는 고유의 기술, 요건 및 위험을 가지므로 계약 조건에서는 별도의 단계 또는 구성요소를 요구한다. IFRIC은 이러한 상황에서 IAS 18 문단 4와 13에 따라 계약이 두 개의 별도 단계 또는

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2) 그 금액을 수행의무에 배분하여 수익을 측정한다.

^{4)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1과 IAS 18을 대체하였다. IFRS 15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FRS 15에서는 (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

구성 요소, 즉 IAS 1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요소와 IAS 18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운영요소로 나누어져야 함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각각의 단계 또는 구성요소에 대해 다른 이익률을 보고할 수도 있다. IFRIC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종종 단일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식별가능하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IAS 11의 병합과 분할 기준은 실시협약의 건설요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 BC32 어떤 경우에는 사업허가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현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즉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수 있는 권리)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무형자산을 이용한다.
- BC33 IAS 185)의 문단 1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BC34 IFRIC은 총수익이 총현금유입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무형자산을 수령할 때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현금유출입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건설서비스가 사업허가자와의 교환거래에서 무형자산과 교환된다. 두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사업

^{5)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IFRS 15에서는 기업에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IFRS 15에서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허가자로부터 받은 무형자산이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소진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해석서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후속적으로 현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이종 자산 과의 교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상황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BC35 일부 IFRIC 위원은 그러한 결과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총 수익이 현금유입으로 제한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교환거래, 즉 이종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 BC36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계약상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권리는 반 드시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수령할 권리인 것은 아니다.
- BC37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산의 성격은 서비스의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제안하였다. 사업허가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할 주된 책임을 지면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을 인식하여야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한다.
- BC38 해석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는, 누가 수요위험(즉, 이용자가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능력과 의향)을 부담하는지에 상관없이, 누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책임을 갖는지를 조사하여 적용할 회계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

들은 제안서에 따랐을 때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회계 모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제공하는 데 참여한 기업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저하시킬 것이다. 일부는 사업의경제성(수요 위험)이 유사한 그림자통행료(shadow toll)방식한1)의도로와 일반적인 통행료 방식의 도로의 예를 들며, 제안서에 따랐을 때 두 사업이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해야하는 정도를 명확히 하기로(문단 15~19 참조) 결정하였다.

BC39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는 제안의 영향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IASB 스태프는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자와의 토론을 준비하였다. 토론참가자들의 결론은 지급인의 신원은 사업시행자의 현금호름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현금호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할 때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존한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호름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자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현금호름이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을 부담한다.

BC40 IFRIC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1) 공공서비스가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사업허가자가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에 동의하는 경우(종종 의무인수계약(take-or-pay arrangements)으로 알려짐) 또는 (2)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고 사업허가자가 문

한1) 도로를 사용한 차량 수를 근거로 정부가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해 주는 방식

단 16에 기술되어 있는 부족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사용에 비례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나 사업허가자로부터 수익을 획득[예: 도로 통행료 또는 그림자통행료(shadow toll)]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자산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경우)

- BC41 IAS 32의 문단 11에서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 취할 계약상 권리'를 포함한다고 금융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동 기준서의 문단 13에서는 '계약상'의 의미는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BC42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현재 권리를 가지며, 실시협약이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허가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재량이 거의 없는 경우, 이를 한도로 금융자산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16에 기술한 방식으로 사업허가자가 계약상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해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권리를 갖는다. IFRIC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 인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위험(수요 위험)을 사업허가자가 부담하는 정도까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을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BC43 IFRIC은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였다.

- (1)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하는 계약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갖기 때문에, IAS 39이의 문단 9에서의 금융보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5년 8월의 IAS 39개정 '금융보증계약'에서는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는다루지 않는다. 이 개정의 목적은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보증계약을 발행하면서 보증인이 인수하는 의무에 대해 부채를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 (2) 이용자나 사업허가자가 계약상 받을 금액을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형식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또는 결정가능한 현금흐름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현재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의 성격은 단지 계약상 지급받을 금액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 직접 지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IFRIC은 이들 계약상 현금흐름을 IAS 32와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실시협약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의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업의 경제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특정 품질 또는 효율성 조건의 충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BC44 IFRIC은 현금을 지급받을 계약상 권리가 사업시행자의 특정 품질이나 효율성 조건 또는 목표의 충족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사회기반시설이사업허가자에 의해 지정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능력이 있음을

⁶⁾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확인해야 하거나, 특정 수준의 서비스와 수용력을 제공함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지정된 운영 기준이나 효율성 목표에 도달하거나 초과했음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판매된 재화나 용역의 후속적인 성과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의 입장과 동일하다.

BC45 따라서 IFRIC 12에서는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대가는, 계약상 받을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성과나 효율성 목표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불확실 하더라도, 금융자산을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7)

무형자산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BC46 IAS 38에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 성자산'으로 정의한다. 그 기준서에서 라이선스를 무형자산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그 기준서는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자산은 식별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BC47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따라서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사용량에 달려있고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투자를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위험(수요위험)을 부담한다.

BC48 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 받도록 고안된 실시협약(문단

^{7)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IAS 18을 대체하였다. IFRS 15에서는 기업에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적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IFRIC 12 문단 16에서도 논의된다.

BC53과 BC54 참조)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현금 수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현금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대신, 사업시행자는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기회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상업적 이익은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사업면허이고, 이는 IAS 38의 적용범위 내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IAS 32 적용지침의문단 AG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자산 및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는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BC49 IFRIC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부족액에 대해서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권리가 사업허가자와의 계약에서 발생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간접적인 권리인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FRIC은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금융자산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가질 수 있더라도 IAS 32의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는 대차대조표일에 다른 실체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다른 실체(즉, 이용자)는 여전히 어떤 의무도 회피할 능력을 보유한다.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을 수령할 현재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전한다.

사업시행자 수익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하는 실시협약

BC50 IFRIC은 다음의 예와 같이 사업시행자 수익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하도록 고안된 실시협약을 포함하는 계약이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고려하였다.

(1)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

안된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부과 요금이 변동된다.

- (2) 사업시행자가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달성할 때까지 이용 자나 사업허가자로부터 수익을 징수하도록 허용되고, 그러한 수익달성 시점에 사업이 종료된다.
- BC51 IFRIC은 그러한 실시협약의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낮은 위험을 갖는다고 보았다. 단지 사용량이 극도로 낮을 때만 계약상의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할것이다. 사용량이 그렇게 낮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업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고정되었다고 여겨질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금융자산의 많은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BC52 그러나 IFRIC은 사업시행자 자산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이 그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 32에서는 금융자산을 수익에 있어서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의하지 않는다. IAS 32에서는 단지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의유무에 따라 정의한다. 권리의 보유자에게 예측가능하고 낮은 위험의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면허의 다른 예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면허가 보유자에게 현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준다고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정책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도록 고안되는 다른 산업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산업에서도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결과적으로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변동조건의사업면허이고, 이는 IAS 38의 적용범위 내의 무형자산으로 분류될것이다.

금융자산과 무형자산

BC53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다른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지급받는다면, 사업시행자의 대가의 각 요소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해 제기된 우려에 따라, 사업시행자 대가의 각 요소 [종종 두 요소를 가지는 실시협약(bifurcated arrangement)으로 알려짐]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그 우려의 내용은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계약의 두 당사자가 공공서비스의이용자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사업시행자의 투자의 회수에불충분하게 되는 위험(수요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수준의 위험 분담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당사자들은 사업허가자가사업시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대해,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그리고다른 일부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권리(무형자산)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실시협약에 합의한다. IFRIC은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가를,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보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요소로 나머지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54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은 실시협약과 관련 법규(존재하는 경우)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민간투자사업들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았다. 분야와 국가별로 기술적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그리고 실시협약의 내용도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법률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개별적인 계약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내용을 포함할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BC55 IFRIC은 IAS 37에서 기업이 자기 소유의 유형자산의 일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을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 16에 따라 그러한 원가는 동 기준서의 문단 7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에 인식해야 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

이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자신의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지규정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제3자인 사업허가자에게 회피할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IAS 37에 따라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BC56 IFRIC은 이 해석서가 이러한 의무의 인식 시점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계약에 따라 의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상황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IFRIC은 IAS 37의 요구사항과 지침이 사업시행자가 다른 의무들을 인식하는 기간을 식별하는 데 충분히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입원가 (문단 22)

BC57 IAS 23에 따라,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된다.8) 동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BC58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IFRIC은 무형자산(즉,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거나 개량되어야만 사업면허가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즉, 사업허가자가 사

⁸⁾ 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 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시행자에게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 령할 계약상 권리를 준 것)은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 하지 않는다. IFRIC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9 IFRIC은 차입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건설서비스나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기전에 연관된 차입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경우 그 기금은 종종 일시적으로 투자된다. 그러한 기금으로부터얻어지는 모든 투자수익은 사업시행자가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IAS 39%에 따라 인식된다. 대체적 회계처리를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얻어진 투자수익은 IAS 23 문단 16에 따라 회계처리된다.10)

금융자산 (문단 23~25)

BC60 IAS 39¹¹⁾의 문단 9에서는 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를 식별하고 정의한다. (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내) 만기보유금융자산 (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리) 매도가능금융자산

BC61 IFRIC 12 문단 24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 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IAS 39 문단 9에서는 금융자산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⁹⁾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¹⁰⁾ 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¹¹⁾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1)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된다.
- (2)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1)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의 경우 자산은 (만약 최초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BC62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수령할 금액이 제공되는 후속 서비스의 질 이나 성과에 따라 다르거나 사업시행자가 달성해야 할 효율성 목 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약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IAS 39의 파생상품 정의에서 무엇보다도 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대 금지급에 있어서의 변동과 관련된 계약 조항은 파생상품의 정의 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IAS 39의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수령할 금액이 문단 BC44에 기술된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이 품질이나 성 과 혹은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달려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 이 해당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을 누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자산 은 그것이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로 받게 되 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나타낼 때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무형자산 (문단 26)

BC63 이 해석서에서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른 요구사항 중에서도 IAS 38은 내용연수가 유한

한 무형자산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97에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BC64 IFRIC은 문단 26에 따른 무형자산을 이자율상각법^{한2)}, 즉 무형자산의 소비뿐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도 고려하여, 자산을 비화폐성자산이라기보다는 화폐성자산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FRIC은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 사용되는 방법과 다른 상각방식의 사용을 정당화할 특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IAS 38 문단 98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 다수의 상각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 방법들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포함된다. 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된 예상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BC65 IFRIC은 이자율상각법이 IAS 38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 12는 이자율상각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 BC66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처음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할 시점을 고려하였다. IFRIC은 건설서비스와 교환으로 수령하는 무형자산(사업면허)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BC67 IFRIC은 양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미이행계약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행의 실무임을 주목하였다. IAS 37에서 미이행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

한2) 감가상각방법의 하나로 현재가치계산을 근거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적게 계상하고 후기에 많이 계상하는 방법임.

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의 일부만을 동일한 정도로 이행한 계약'으로 기술하고 있다. Framework의 문단 91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BC68 따라서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미이행된 정도까지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계약이 서명되는 시점에일반적으로 미이행상태임에 주목하였다. IFRIC은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을 누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그것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사업면허)를 수령할 권리(무형자산)를 나타내는 정도까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 BC69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허가 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용가능하게 된 기존 사회기반시설 항목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BC70 그러나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자산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해 다른 고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산들은 사업시행자의 자산이고 따라서 그 자산과 교환되어 부담하게 된 의무가 회계처리되듯이일반적인 인식과 측정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BC71 IFRIC은 그러한 자산들이 IAS 20의 문단 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한 정부보조금을 나타내는지 고려하였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IFRIC은 그러한 자산이 사업시행자의 서비스에 대해 독립된 당사 자간의 거래를 근거로 사업허가자에게 지급받을 전체 대가의 일부라면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IAS 20의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동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규정 (문단 29와 30)

- BC72 IAS 8에서 기업은 해석서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그 해석서의 특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정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으로 회계처리 되어야한다.
- BC73 IFRIC은 소급결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재분류와 재측정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IFRIC은 사업시행자의 대차대조표에 과거에 포함되었던 모든 금액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소급적인 재측정이 항상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 BC74 IFRIC은 소급재작성이 가능하지 않을 때 IAS 8에 따라 가장 이른 실행가능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는 당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전진법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데, IFRIC은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IFRIC은 올바른 회계모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BC75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고 있다.

IFRS 1의 개정

BC76 경과규정이 IFRS의 기존 이용자와 최초채택자 모두에게 가능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IFRS 1의 개정이 필요하다. IFRIC은 이 규정들을 통하여 IFRS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믿는다.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BC77 IFRIC의 제안서로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안서는 D12, D13 및 D14의 세 개의 개별 해석서 공개초안으로 발행되었다. IFRIC 12를 완성하면서 IFRIC은 세 건의 해석서 공개초안을 통합하였다.
- (2) IFRIC 12와는 달리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이유와 문단 5에서 IFRIC에 의해 채택된 통제접근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IFRIC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고 자 IFRIC 12에 첨부자료 2를 추가하였다.
- (3) 제안서의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즉, 전체내용연수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IFRIC 12는 그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 (4) 제안된 접근법에서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된 책임이 사업허가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참조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모형을 기업이 결정하였다. IFRIC 1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수령하는 정도까지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 (5) IFRIC 12와는 달리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인식하는 자산의 성격(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사업 운영단계의 회계처리를 결정함을 암시하였다.
- (6)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에서는 IAS 23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 할 수 있었다. IFRIC 1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차입원가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면, 민간투자사업에 귀속되는 차입원가는 IAS 23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에 따라 자본화 될 수도 있다.12)
- (7) IFRIC 12를 완성하면서 IFRIC은 IFRIC 4를 개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¹²⁾ 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를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 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2호(IFRIC 1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재무보고기준해석 제12호(IFRIC 12)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4.1, 한28.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 28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설계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제12호(IFRIC 12)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2호가 IFRIC 1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IC 1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한다.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인식과 측정)를 다룬다. 사업시행자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룬다.

2. 회계처리방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권만을 가진다.

(2)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 (가) 사업시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 한다.
- (나) 이 경우 시행대가의 회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금융 자산을 인식하며,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권

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3)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사업허가자인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타항목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자산들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산들은 정부보조금이 아니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관련되	는 국제회기	베기준
2007.11.23. 제정	민간투자사업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	ements	5	

이 해석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다른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 018.11.1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Amendments to the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	References to Conceptual
	한 개정'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7.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IFRS 16 Leases
	'리스'	
2015.11.6.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	with Customers
	는 수익'	
2015.9.25.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2 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IFRS 13 Fair Value
	'공정가치 측정'	Measurement